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1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조계원 · 박수현 · 민형배
양문석 · 이기현 · 임오경
김준혁 · 조정식 · 이성운
김문수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발굴·복원·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복원·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역사문화권브랜드화”란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및 정체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비와 함께 해당 지역만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문화·관광 등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0조의2에 따른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유적·유물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권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2.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브랜딩

4. 문화관광과 연계된 마케팅

5. 역사문화권의 정체성이 반영된 경관 및 향유공간 정비

6. 역사문화권과 지역의 산업·경제와 연계사업

7. 그 밖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역사문화권브랜드화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해충돌의 조정

2. 정례적 의견 수렴

3.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협업

4. 그 밖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역사문화권브랜드화”란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및 정체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비와 함께 해당 지역만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문화·관광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u>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생 략)

<신 설>

9. 제10조의2에 따른 역사문화
권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에 관
한 사항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0조의2(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유산
청장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유적·유물과 관련
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권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2.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3.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브랜
딩

4. 문화관광과 연계된 마케팅

5. 역사문화권의 정체성이 반영
된 경관 및 향유공간 정비

6. 역사문화권과 지역의 산업·
경제와 연계사업

7. 그 밖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의2(역사문화권브랜드화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해충돌의 조정
2. 정례적 의견 수렴
3.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협업

4. 그 밖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유산
청장이 요청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추진협의체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